

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의안 번호	118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의거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,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나.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2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.
- 다. 위탁기간('23.12.31.) 만료 예정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 최초동의일('16.4.22.)로부터 6년이 경과된 사업이므로 재계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민간위탁 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
- 위탁기간 : 3년('24.1.1.~'26.12.31.)
- 사업비 : 1,593,68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- 운영방법 :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
- 선정방법 : 적격 심의를 통한 재계약
- 수탁자명 : 한국장애인개발원(대표 : 이경혜)
  - 소재지 :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
  - 설립목적 :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및 정책개발·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

###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위임·위탁)
  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탁)
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
- 추진 필요성
  -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과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장기·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
  -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·판정·재활치료·자립서비스·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자격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

- 전문인력 직접채용 및 양성 과정이 장기간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교육비 인건비 경감 등 비용절감의 효과

○ 재계약 사유

- 장애인 단체 등 지역사회 67개 기관과 연계 협력 및 진행, 발달장애인 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청과 특화사업 운영, 발달장애인 피의자 지원을 강화하여 권익옹호기관과 업무 차별성 노력 등 우수사업실적 보유
-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부·출연 공공기관 평가에서 복지부주관 3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A등급,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조사 3년 평균 84.4점을 받음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위임·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국·시비 예산 계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임종수 (☎ 2133-7446 )